

독일 농민재해보험

Richard Wurbs (독일농민사회보험조합연맹 재해예방·조직·법령부문 본부장)

■ 농업사회보험의 발전

독일에서 농업분야와 관련된 최초의 사회권은 19세기 후반 도입된 일반사회입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회입법 도입 당시에는 단지 농업과 임업 영역의 근로자만이 사회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었다. 농장주, 그들의 배우자 그리고 가족종사자들은 그 이후 몇 십년 동안 점차 사회보장망에 편입되어졌다. 농업분야의 자영자들에게도 그들의 개인적 그리고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강력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형태, 범위 그리고 그 의미에 있어서 초기의 빈약함을 벗어나서 농업 영역 특유의 총괄적 시스템이 형성될 수 있었다. 이는 사회정책적 그리고 농업정책적 현실과 필요성을 상호 연계시키는 총괄적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러한 발전의 결과로서 농업인 사회보험은 4가지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재해보험 (1886), 농업인 노령보험 (1957), 농업인 의료보험과 요양보험 (1972). 더불어 법적 그리고 임금협약적 기초 위에 농림업의 근로자와 그들의 사망시 유족을 위한 추가보험 (Zusatzversicherung)이 존재한다.

■ 농업재해보험

농업재해보험의 발전

1886년

농림업을 위한 재해보험법과 의료보험법의 공포

1888년 ~ 1889년

지역으로 분할된 48개의 농업재해보험조합의 설립

1900년

농업재해보험안전보건기술감독관(TAB)을 통한 농림업 기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농업재해보험조합에 의무화 함.

1911년

농업재해보험조합들이 재해예방규정을 공표할 것을 의무화함.

1925년

직업병과 통근상의 재해에 대한 보상을 재해보험에 삽입함.

1963년

'모든 적합한 수단'을 동원하여 재해예방을 수행해야 함을 규정한 일반조항 신설

1997년

법정 재해보험법이 사회법전 제7권(SGB VII)으로 편입됨.

이는 무엇보다도 작업장에서의 노동자 안전보건에 관한 EU 지침을 반영한 것으로서 의미를 지님.

농업인 사회보험제도중에서 가장 오래된 농업 재해보험은 1886년 5월 5일 '농림업 기업의 근로자를 위한 재해보험과 의료보험에 관한 법 (Gesetz betrifft in die Unfall- und Krankenversicherung der in land- und forstwirtschaftlichen Betrieben beschäftigten Personen)'을 통해 창설되었다. 1888년과 1889년에는 지역으로 분할된 48개의 농업인 재해보험조합 (LBGen)이 설립되었다. 농업인 재해보험조합 설립 이후 농업인 재해보험의 피보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13년

에는 1,700만 명이라는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재해예방을 위해 이미 1900년에 재해보험안전보건기술감독관(Technische Aufsichtsbeamte: TAB)의 지도·감독을 산재보험조합들이 의무화할 것을 법에 명시하였다. 또한 1911년에는 효과적인 재해방지를 위해 재해예방규정(UVV: Unfallverhütungsvorschriften)을 공표할 것을 농업인 재해보험조합에 법적으로 위임하고 의무화하였다. 1925년에는 직업병과 통근상의 재해에 대한 보상 규정을 재해보험에 신설하였다.

지난 세기의 마지막 30년 동안 근로자 이외에도 농장주와 그들의 배우자 및 가족종사자 또한 재해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특별 규정들이 일반적인 법정 재해보험의 영역 안에 신설되었다. 이는 초기에 오직 농림업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고안되었던 법정 의무보험으로서 농업인재해보험이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을 지닌 소규모 영세 농장의 가족에게도 확장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63년에는 농업인재해보험조합들이 '모든 적합한 수단'을 동원하여 재해예방을 수행해야 함을 법적으로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독일 법정 재해보험은 하나의 예로서 독일 법정 의료보험과는 대조적으로 비용 압박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다.

지난 세기의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기타 다른 법들을 통해 농업인재해보험조합의 그들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한 관할 영역이 꾸준히 확장되어졌다. 1997년에는 법정 재해보험법의 사회법전 제 7권으로의 삽입과 함께 여러 가지 개혁조치들이 취해졌다. 특히 유럽연합 지침(Richtlinie: Directive)을 반영하기 위한 법문상의 변화와 조정은 노동자 안전보건에 기여하였다. 더불어 다른 EU 회원국들의 재해예방 관련 기관들과의 꾸준한 접촉은 작업장 내 노동자 안전보건과 관련된 미래의 해결방안을 찾는 열쇠가 될 것이다.

보험관리운영기관

농업인재해보험은 농업인재해보험조합에 의해 운영된다. 이 조합들은 조합운영원칙에 기반한 자치운영조직을 지닌 공법상의 기구들이다. 자치운영의 원칙은 농업인재해보험조합들에게 입법자(의회)를 통해 법문으로 제시되는 공동의 업무사항들을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와 같은 자율성의 부여는 재해보험조합들이 그들의 피보험자의 이해와 문제들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그래서 농업인재해보험조합들은 예를 들어 이미 언급된 재해 예방규정(UVV)을 자기 책임하에 독자적인 법률로써 의결한다. 독일에는 지역별로 나누어진 8개의 농업인재해보험조합과 전국에 걸쳐 관할권을 지닌 원예인재해보험조합이 존재하고 있다.

회원 자격

농업인재해보험조합의 회원은 법에 따라 보험에 적용되는 농업기업을 운영하는 모든 기업인으로 한다. 회원이 된다는 것은 기업인이 농업인재해보험조합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을 의미한다. 보험료는 부과방식에 따라 차후의 급여 수급을 대가로 각출된다. 보험료 납부를 통해 근로자, 농업기업인의 배우자 그리고 기업 내 가족종사자들의 고의성 없는 신체상해에 대한 기업인의 민법상의 손해 배상 의무가 사라진다. 보험료 수준은 무엇보다도 산재와 직업병의 예방, 산재 이후의 직업재활, 사회재활 그리고 산재로 인한 보상금과 관련된 농업인재해보험조합의 지출비용에 의거하여 결정된다.

농업인재해보험조합의 가입 대상 기업은 다음과 같다.

- 농업과 임업 기업. 여기에는 원예, 포도재배, 양어, 양어장 그리고 담수어업 및 자연·환경 보호의 목적을 추구하는 자연경관보호 기업들도 포함됨.
- 농업과 임업의 임금기업
- 사냥, 공원 및 정원관리 기업, 묘지
- 농업을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기업
- 토지경작 없이 유용동물이나 종축을 사육하는 기업(예를 들어 종우 또는 사료기업, 가금사육장)
- 농업부업, 농업가정
- 위에서 언급한 기업에서 활동하기 위한 직업교육 및 연수 기업

영업에 활용되는 토지의 종류 및 규모와 상관없이 위에서 언급된 기업들은 농업인재해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또한 농업인재해보험의 가입자격은 기업인이 주업으로 농업을 하여야 한다거나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기업을 운영하여야 함을 전제하지 않는다. 농업인재해보험은 자신의 농작물을

시장에 내다파는 농업기업의 협력업체와 부수기업 또한 포괄한다. 농업기업을 위한 건축작업 및 통상적 의미에서 농업기업의 가사일 또한 농업인재해보험조합의 관할 아래 놓여 있는 영역들이다.

피보험인의 범위

원칙적으로 다음의 사람들이 농업재해보험의 피보험자들이다.

- 농업기업의 모든 기업인들
- 농업기업에 근무하는 기업인의 가족구성원과 배우자 또는 동거인
- 노동, 서비스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고용된 모든 근로자
- 전술한 경우에 적용되지 않더라도 기업인의 명시적인 혹은 외견상의 결의에 의거하여 일시적으로라도 다른 피보험자들처럼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 농업자치운영조직이나 그들의 연합조직을 포함하여 농업 보호 및 후원을 위한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 농업 의료보험조합이나 농업 노령연금조합의 비용으로 병원이나 요양기관 입원 또는 입원에 준하는 치료와 의료재활을 받고 있는 사람들

농업인재해보험의 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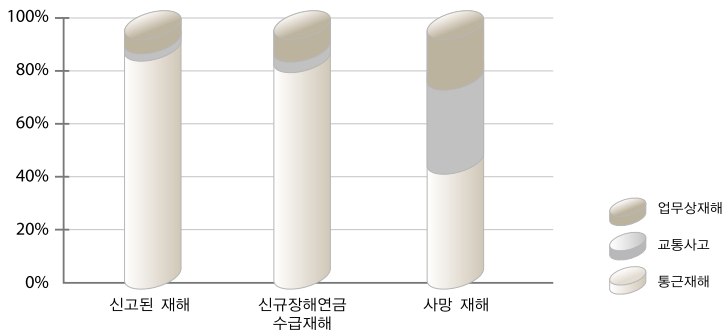
농업인재해보험의 재정은 원칙적으로 보험료와 국가의 조세 (연방정부 세입)를 통해 이루어진다. 농업기업에서 경영하는 토지는 1963년 이래로 연방정부 세입의 지원을 통해 그 부담을 덜게 되었다. 연방정부 세입에 의한 부분적 재정은 독일 농업의 구조변화를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 지향적 보조금은 한편으로는 농업 분야의 소득 향상을 위해 농업기업인의 보험료를 경감해 주는 명시적 목적을 지니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간의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료 부담의 격차를 보조금을 통해 상쇄하고자 하였다. 2007년 농업인재해보험의 재정에서 국가 부담은 20.85%에 달했다. 당해에 농업인재해보험조합의 수입은 대략 9억 5,900만 유로였다.

보험사고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란 상해로 인한 신체적 손상의 원인을 보험에 의해 포괄되는 피보험 행위에서 찾을 수 있는 사고를 의미한다. 사고란 법적 규정에 의거하여 시간적 제한성 하에 신체의 외부로부터 발생한 사건으로서 건강상의 상해나 사망을 유발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림 1] 업무상 재해, 교통사고, 통근재해의 비율(2007년)



통근상 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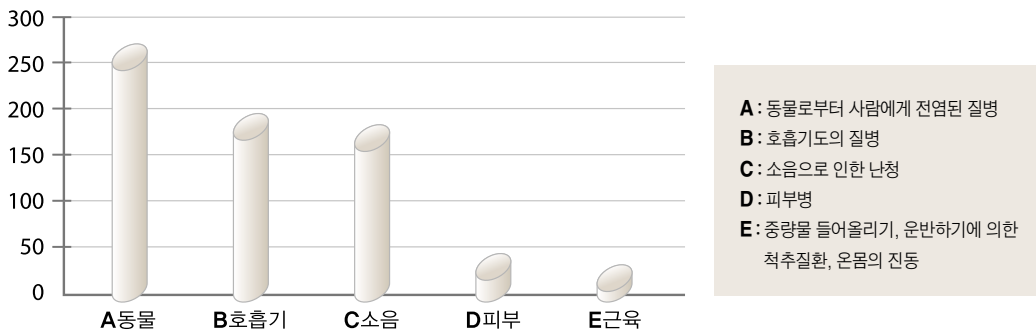
통근상 재해는 다른 곳으로의 경우 없이, 보험에 의해 포괄되는 피보험행위가 수행되는 장소로 출근하는 길에서 또는 그 장소로부터 퇴근하는 길에서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1925년 이래로 업무상의 재해와 동일하게 통근상 재해도 보상을 받게 되었다. 만약 피보험자가 자신의 업무 수행을 전제로, 아이를 보육원에 맡기기 위해 출퇴근 길에서 벗어나 경우했을 때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 재해 또한 보상받게 된다.

직업병 (BK)

직업병이란 직업상의 행위를 통해 발생하고, 정부에 의해 법규정상 직업병으로 공인된 질병을

의미한다. 질병이 직업병으로 공인될 수 있는 조건은 그 질병이 의학적으로 특수한 영향을 통해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일반 기타 다른 인구보다는 특정 집단이 보험에 의해 포괄되는 피보험행위를 통해 그 특수한 영향에 상당히 높은 정도로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

[그림 2] 공인된 직업병 (2007년)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급여

농업인재해보험조합은 요양 급여 (의료재활), 직업생활에 참여를 위한 급여 (직업재활) 그리고 사회생활에 참여를 위한 급여 (사회재활)를 제공한다. 또한 재해로 인한 피보험자의 소득상실도 현금으로 보상된다.

<표 1> 농업인의 재해보험조합의 보험급여 (2007년)

직업재활급여	8,302,000 유로
예방	54,395,000 유로
행정비용과 소송비용	112,270,000 유로
요양급여	287,820,000 유로
장해연금과 유족연금, 보조금과 장례비	440,000,000 유로

요양치료 (의료재활)

농업인재해보험조합은 산재 혹은 직업병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자에게 요양을 제공한다. 의료재활은 보험사고를 통해 발생한 신체적 손상 또는 소득활동능력의 감소를 유발할 수 있는 건강손상을 극복하고자 하며, 극복이 불가능할 경우 최소한으로 완화하고자 하고, 재해의 후유증으로 인한 악화를 예방하고자 한다.

직업생활에의 참여를 위한 급여 (직업재활)

직업재활의 목적은 상해를 입은 자를 그 사람의 소득활동능력에 따라 그리고 이제까지의 활동, 성향, 적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지속적으로 직업생활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데에 있다. 이미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농업인재해보험조합의 전문직업재활상담원은 상해를 입은 자에게 직업생활에의 참여를 위한 급여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고 상담한다. 이전 직장에 복귀가 여의치 않다면, 재해보험조합은 포괄적인 원조를 제공한다. 이 원조는 훈련과 재훈련 또는 전직훈련조치들을 포함한다. 이때 이러한 원조와 관련해서 필요한 숙식비 및 교통비 또한 지급한다.

사회생활에 참여를 위한 급여 (사회재활)

이 급여의 목적은 피보험자가 사회의 일상의 삶으로 복귀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 상해를 입은 자의 개인적 상황에 맞추어 그리고 보험사고를 통해 발생한 손상의 정도와 경중을 고려하여 농업인재해보험조합은 수많은 급여들을 제공한다. 즉 예를 들어 아동보육비용을 조합이 부담하거나 상해를 입은 자에게 적합한 주거의 임대료에 대한 원조를 제안한다. 상해로 인한 신체적 손상을 고려하여 상해를 입은 자의 자동차를 개조함으로써 운전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른바 차량보조금 또한 사회통합을 위한 급여에 속한다.

경영원조과 가사원조

경영원조와 가사원조는 농업인재해보험의 특별급여이다. 이러한 종류의 급여를 통하여 농업인

재해보험은 상당히 기업인 친화적인 보험임을 알 수 있다. 경영원조와 가사원조는 농업 기업인들에게 보험사고의 발생 이후 그들의 농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준다. 만일 기업인의 상태로 인해 기업의 지속적 운영이 불가능하고, 그 농장에 근로자나 가족종사자가 꾸준히 고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피보험자는 경영원조를 받을 수 있다. 경영과 가사원조는 농업직업조합에서 파견한 대체인력을 통해 또는 기업인 측에서 스스로 마련한 대체인력을 위한 비용지급을 통해 정적인 수준에서 보장된다. 이러한 급여의 수급 시에 기업인은 매일 10유로를 지불함으로써 그 급여를 위한 비용에 동참하여야 한다. 경영원조와 가사원조 급여의 수급을 위해서는 대체인력 투입 직전에 해당 지원서류를 농업인재해보험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휴업급여

치료를 받는 동안 피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한 노동불능인 한에서 휴업급여를 받게 된다. 이 급여는 봉급 또는 소득상실에 대한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농업 근로자는 재해 전 취득하던 노동소득에 기반하여 고용인이 지급하는 상병급여의 종료 이후 휴업급여를 받게 된다. 또한 휴업급여는 보험사고로 인해 노동불능 상태가 존속하고 있고, 치료로 인해 하루의 생업이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지급된다. 급여 수급기간 동안 상해를 입은 자가 어떤 형태로든 소득이 있다면, 이는 휴업급여의 축소로 이어진다.

기업인과 농장에 종사하는 그의 배우자는 단지 예외적으로 그리고 신청에 기초하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농장 운영 또는 가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들이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급여수급이 가능하다.

전환급여

재훈련 과정에의 참여와 같이 직장생활에의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피보험자는 전환급여를 수급한다. 프로그램 참여로 인해 피보험자가 하루의 생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보상의 의미로서 이러한 전환급여가 지급된다. 피보험자의 가족 수 혹은 재해 이전의 노동소득의 수준은 전환급여의 수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보험자에 대한 연금

하나의 또는 여러 가지의 보험사고로 인해 재해 발생 시점부터 26주 이후에도 최소 20%의 생업 능력 상실이 지속되고 있다면, 피보험자는 기본적으로 연금을 수급하게 된다. 여러 가지 보험사고가 중복된 경우는 재해로 인해 발생한 노동능력 감소 정도의 총합이 최소 20%에 달해야 한다.

이와는 다르게 농장주, 농장주의 배우자 그리고 농장에서 임시적으로 일하지 않고 항시적으로 일했던 가족종사자의 경우는 보험사고로 인해 생업능력이 최소 30% 이상 상실된 경우에만 연금수급권을 부여받게 된다. 입법기관은 농업 구조 변화로 인해, 즉 보험료를 지불하는 농업인의 지속적인 축소 때문에 재해보험의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고 있고, 이러한 농업의 직종 상황에 상응하여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할 것이다. 피보험자에 대한 연금은 노동불능 상태가 발생한 이후 그리고 그로 인해 지급된 휴업급여가 만기된 이후 지급된다. 이에 반해 농장주와 그의 배우자 또는 동거인의 경우에는 26주의 대기 기간이 지나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농업 근로자를 위한 연금 수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해 직전 1년 동안 실제로 취득한 연간 노동소득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보험에 가입된 농장주와 그와 함께 일하는 배우자 그리고 노동계약서는 없지만 농장에서 항시적으로 함께 일하는 가족종사자의 경우에는 입법기관이 그들의 연간 노동소득 수준을 책정한다. 소득능력을 100% 상실한 경우에 연간노동소득의 2/3 수준에서 연금이 지급된다. 소득능력 상실 정도가 100% 미만인 경우에는 확인된 소득능력 상실 정도에 상응하여 연금액도 축소된다. 연금은 연간 액수로 환산되지만, 지급되는 연금은 월별로 지불된다.

농장주와 농장에서 그와 함께 일하는 배우자 또는 동거인 그리고 노동계약서는 없지만 농장에서 항시적으로 함께 일하는 가족종사자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그들의 나이가 65세 이상이었다면 법으로 결정되는 그들의 연간 노동소득은 축소된다. 그 연간 노동소득의 축소 수준은 나이에 상응하여 다르게 책정된다.

피보험자의 사망 시의 급여

피보험자의 사망 시에 농업인재해보험조합은 장의비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운송비 및 유족연금 또한 지급한다. 장의비와 운송비는 장례와 운송을 실제로 행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유족연금은 업무상 재해와 직업병의 결과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된다. 유족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과부연금/홀아비연금
- 이혼한 배우자를 위한 연금
- 고아연금
- 부모연금

사망한 피보험자의 과부 또는 홀아비인 경우에는 재혼하기 전까지 연금이 지급된다. 이들을 위한 낮은 수준의 연금(연노동소득의 30%)의 지급기간은 최대 24개월이다.

이혼했던 전 배우자의 경우에는 이혼 후 피보험자로부터 생활비 청구권을 지니고 있거나 또는 실제로 생활비를 받고 있다면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피보험자의 자식은 18세가 될 때까지 고아연금을 받을 수 있다. 특수한 경우에 고아연금은 27세까지 지급될 수 있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이상의 나이까지도 수급할 수 있다. 편부모 아이를 위한 연금 수준은 연간 노동소득의 20%이고, 양부모를 상실한 아이를 위해서는 30%가 지급된다. 특정 조건 하에서는 고아연금 수급자 자신의 소득을 환산하고 그 중 비과세액을 고려하여 연금 수준이 결정된다.

재해방지와 예방

농업인재해보험조합의 본질적인 임무는 '모든 적합한 수단'을 활용하여 업무상 재해와 직업병을 예방하고, 업무시에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위험을 방지하며, 작업장 내에 효과적인 응급처치를 마련토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각각 어떻게 행해져야 하는지는 이미 위에서 언급한, 직업조합들이 자기 책임하에 결의하여야 하는 재해예방규정이 규정하고 있다.

피보험자들이 재해예방규정을 이행하도록 관철시키고 감시하는 임무는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안전보건기술감독직(TAD)의 직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표 2〉 재해보험조합 안전보건기술감독관의 업무 횟수 (2007년)

(단위:건)

작업장 순찰 지도 · 감독	182,997
농업 작업장에서의 상담	62,097
재해조사	12,010
농기계 제품에 관한 상담	14,027
교육	3,714

작업장 순찰 지도 · 감독

작업장 순찰을 통해 기업 내의 작업안전상의 결함 사항들이 발견되고, 이를 통해 재해와 직업병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 규정에 의거한 결함 제거를 위해 안전보건기술감독관들은 필요한 지시 사항을 기업인에게 직접 건네준다. 방문한 기업에 안전관리인력이 일을 하고 있다면, 이들은 작업장 조사 시에 동행한다. 기업인이 작업안전을 위한 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농업인재해보험조합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다. 또한 작업안전상의 결함으로 인해 산재가 야기 되었다면, 이 경우에는 재해보험 급여비용을 그 기업인에게서 징수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 법률은 규정하고 있다. 단, 이러한 경우는 기업인이 안전보건규정을 매우 심각하게 위반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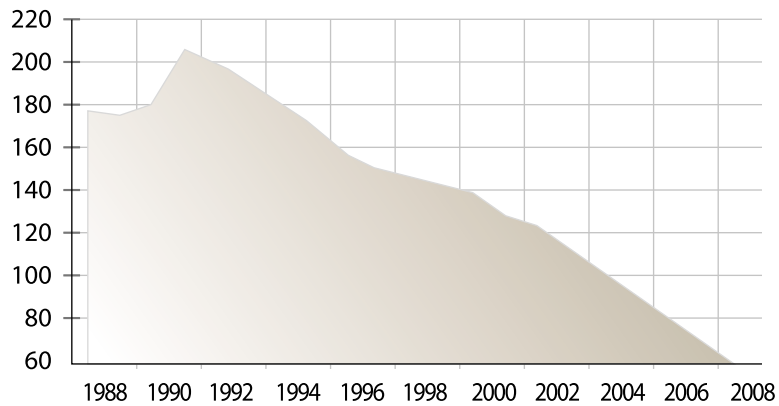
재해조사

철저한 자문과 순찰감독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업 내에서 재해가 발생했다면, 재해 조사가 수반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작업안전상의 결함이 발견되고 제거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획득한 지식과 정보는 농업인재해보험조합의 규정집 또는 알림 팜플렛에 수록된다. 이러한 집중적인 노력을 통해 지난 몇 년간 재해발생 건수는 꾸준히 감소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 분야에서의 작업 시에 매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치명인 상해를 입고 있다. 특히 이러한 상해는 임업과 원예조성 작업 시에 이전처럼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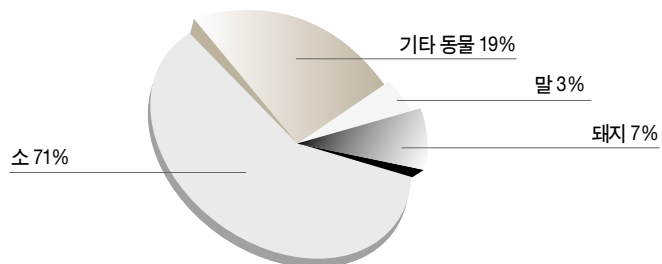
농업인재해보험조합은 농업 분야에서 최대한 안전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고 있다.

[그림 3] 1998년 이후 재해발생의 전개 양상 : 신고의무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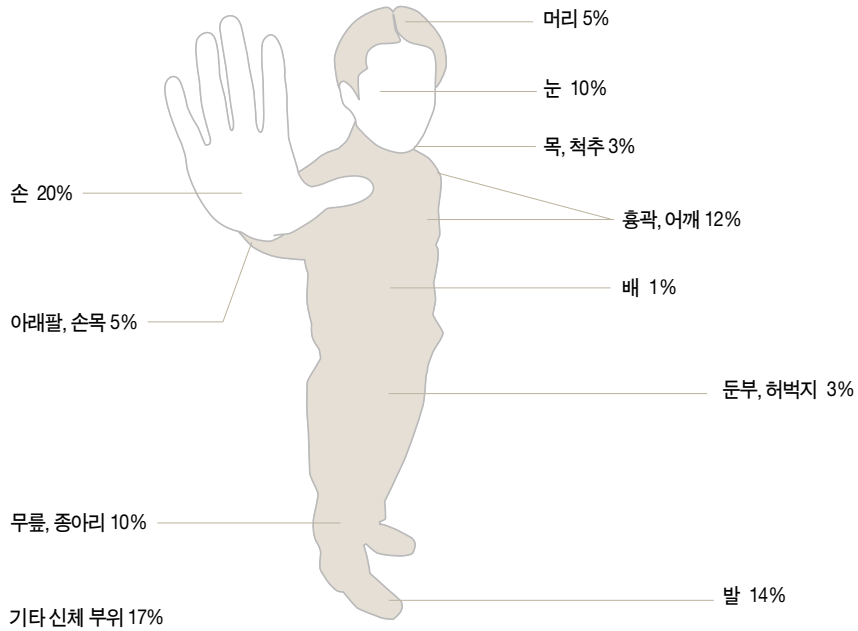


주 : 노동불능이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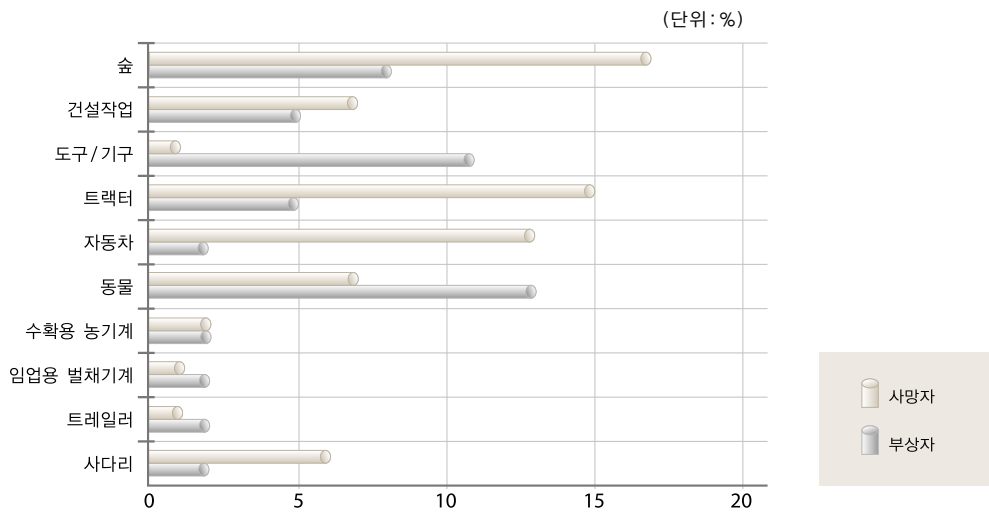
[그림 4] 동물에 의한 재해 (2007년)



[그림 5] 상해 부위 (2007년)



[그림 6] 재해를 빈번히 발생시키는 기인물 (2007년)



교육과정

농업인재해보험조합은 작업장 순찰 이외에도 수많은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피보험자들은 안전한 작업기술과 관련된 지식을 향상시킨다. 일일(一日) 교육과정이 선호되어 활용되는데, 이는 작업장의 기술적 요인 때문에 더 이상의 여유 시간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은 농업인재해보험조합이 스스로 제공할 수도 있고, 농업협회, 임업노동자학교, 주산림청과 연방산림청과 같은 농업전문기관들과의 공조를 통해 교육과정을 개최할 수 있다. 교육 내용은 다양한데, 주로 재해 관련 중점 사항들이 다루어진다. 산림에서의 안전한 벌채를 위한 교육이 하나의 사례로서 거론될 수 있다.

작업안전교육 이외에도 종종 일반적 성격의 상담을 희망해 오기도 한다. 예를 들어 기업 내에서 개축을 계획하고 있거나, 농기계·기구를 새로이 구입하려는 경우에 상담을 요청받는다. 재해보험안전보건기술감독관들은 농업 기업인과의 개인적인 상담 이외에도 농업 분야 종사자들의 지역 회합에 참여하여 상담과 활동을 통해 그들을 돕는다. 이와 같은 상담에서는 포괄적인 정보 자료들이 자주 배포된다. 정보 자료는 농업인재해보험조합에 의해 꾸준히 개정되고, 정보기술에 대한 최신의 요구 사항들이 반영된다.

농기계 제조자에 대한 상담

오늘날 점차 증대하는 농업 분야에서의 기술화는 그 자체로 커다란 재해위험을 초래한다. 이러한 재해위험은 농기계·기구의 제품 설계와 제조 당시에는 예견될 수 없는 것들이었다. 2007년 농업 분야에서의 재해 중 19%가 농기계·기구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농기계 제조자에 대한 상담이 안전보건기술감독직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되었다. 2007년에 14,000 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특히 중소 규모의 기업 내에서는 숙지해야 할 수많은 규정과 개념을 개괄할 만한 전문인력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때 이러한 기업인들은 상담을 통해 안전기술에 관한 최신의 모든 정보를 숙지한 후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다. 이러한 상담은 유럽연합 내부시장의 형성으로 인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유럽연합 내부시장 형성 이후 기계에 관한 안전

1993년 효력이 발생한 국가규정은, 기계와 장비에 관한 안전공학적 상태와 조달을 그 내용으로 하는 유럽연합 지침을 유럽연합회원국 개별 국가의 국가법상에 적용한 것이었다. 이 이후 유럽경제권으로 수출되는 기계들은 기본적인 안전과 건강에 관한 요구 사항들을 준수해야만 한다. 이러한 기계들은 CE 마크를 부착하게 된다. 이러한 표지와 이와 함께 제공되는 합격증명서를 통해 기계제품은 법적 요구 사항의 준수를 증명하게 된다. 구체화된 유럽연합 공동의 규격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계제품은 이러한 증명 행위를 통해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을 보증받게 될 것이다. 농업 기계와 관련한 이와 같은 규격 통일이 유럽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체결되고 있다.

동근톱이나 손으로 작동하는 전기톱과 같은 특별히 위험한 기계들은 수출 전에 생산표준검사(Baumusterprüfung)를 통과해야만 한다. 해당 검사와 합격증은 국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전망

유럽연합은 유럽 내부시장을 위한 지침을 통해 기계·기구 그리고 기타 판매물의 생산과 조달을 통일적으로 규제하고자 할 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지침의 마련을 통해 사업장 내 안전보건과 관련된 통일된 규제를 계획하고 있다. 수하물 작업과 관련하여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을 담고 있는 EU 지침을 실례로 거론할 수 있다. 이러한 지침에는 최근의 예방 관점이 반영되어져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EU법의 발전은 농업인재해보험조합에 대한 요구 사항이 증대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케 해준다. 이 때문에 농업인재해보험의 미래적합적 시스템은 이미 지금 그 선로에 들어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KLI**

오스트리아 농민재해보험

Christian Figl (오스트리아 농민사회보험청 법률국장)

■ 오스트리아 농민재해보험의 개괄 : 법적 개요 2009

산재보험에서 농민보호는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작업장에서의 사고와 직업병에 대한 사회적 보호이다. 이는 산재보험이 각각의 직업과 관련해 운영되기 때문이다.

작업장에서의 사고와 직업병 예방은 산재보험의 일차 과제이다. 그러나 이 과제의 완벽한 수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2차 과제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2차 과제는 상해와 직업병을 되도록 빨리 가능한 한 잘 치료하여 재해 당사자가 직장과 사회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고를 당한 후 1년 동안은 무엇보다도 상해자의 성공적인 치료와 경제적인 최저생계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경영이양연금」이 장애자의 경제력 보장을 위해 보장된다.

다음의 첫 번째 장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농민사회보험(BSVG)에 따른 산재보험에 따른 자격조건을 설명하고자 한다.

■ 재해보호

누가 재해보험에 가입되는가?

농민재해보험은 '기업보험'이다. 다시 말해, 보험료가 기업별로, 즉 경영인에 의해 한 번만 징수된다. 이런 기업별 보험료 징수를 통해 작업장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경영인 그리고 경우에 따라 임시 고용된 가족종사자들까지 보호된다. 그래서 복수의 직업을 동시에 갖는 자는 각각의 직업으로 따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업이 농업 자영자이면서 동시에 다른 직장에 고용되어 있는 자, 혹은 부업이 사냥 임차업이면서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농업 이외의 산업' 뿐만 아니라 농업 자영인으로서 혹은 사냥 임차인으로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농업 이외의 산재보호'가 오로지 농업 이외의 사고와 직업병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들이 농장에서 당한 재해는 '농업 이외의 작업'에 의한 산재보험에서 재해로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보호되지 않는다.

경영인

경영인은 통합가치(Einheitswert) 150유로 이상이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일정 수준 이하의 통합가치에서 생활비는 기업의 수입에서 제외된다.

고용된 가족구성원

임시 고용된 가족구성원이란,

- 배우자
- 자녀, 손자, 양자녀 및 의붓자녀
- 부모 및 조부모, 양부모, 의붓부모, 배우자의 부모,
- 이들은 작업장에서 일함과 동시에 보험에 가입됨. 주업일 필요 없음.

- 형제 및 자매: 임시 고용된 형제 및 자매는 일반사회보험법(ASVG)이나 자영자사회보험(GSVG)에 의해 강제 가입된 작업장에 고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농민사회보험(BSVG)에 의해 보험에 가입됨.

사냥 및 어업 임차인

사냥 및 어업 임차인은 농업과 임업 자영업자로 간주되어 모든 사냥과 어업 활동에서 재해보험법 상의 보호를 받는다.

기타 재해보험 가입자

다음의 대상자 또한 농민사회보험(SVB)의 재해보험에 가입된다. 특이한 사항은, 농민사회보험(SVB)은 다음의 경우에 농민사회보험법(BSVG)의 급여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대신 일반사회보험법(ASVG)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 농업회의소 개인기관 및 집단기관의 구성원들
- 농민사회보험(SVB)의 관리운용을 담당하는 피보험자들의 대표자들
- 교회의 활동과 농장 작업에 관여하는 교회에 소속된 자들
- 농업·임업 작업장의 공공경영자

작업장에서의 사고

“아, 이것 작업하다 발생해서”... 누구나 이렇게 이야기한다. 대부분의 경우는 진실이다. 그러나 항상 그렇지도 않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다음의 질문을 할 필요가 생긴다: 도대체 무엇이 사고일까? 법률적으로 사고의 개념은 정의되어 있지 않다. 수십 년 동안의 판결을 통해서 사고를 “장소와 시간이 보호된 업무와 관계 있으면서 당사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신변상의 상해 혹은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급작스러운 기대하지도 예상치도 못한 상황”으로 정의할 수 있을 뿐

이다. 예를 들어 농업 자영업자가 사다리 위에 서 있다가 사다리가 부러지면서 땅에 떨어져 심하게 다친 경우가 이에 속한다.

작업중의 사고

농업자영업자가 농장에 조금 전까지 있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다: 이 사고는 작업장에서 일어난 사고이다. 그러나 모든 사고가 자동적으로 작업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는 작업장에서 일어난 사고와 직업병과 관련해 급여를 지급할 것인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므로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재해보험금의 수준은 재활과 결부될 경우, 의료보험 수준과 상당히 달라진다.

법률상 작업장에서의 사고는 원인, 장소 및 시간이 보험으로 보호된 업무와 관련 있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작업 장소와 시간은 법률상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없다. 농업의 '작업 장소'라는 것은 그 성격상 매우 폭넓은 개념이기 때문이다. 농업의 작업장은 집과 집앞 뜰 그리고 초원, 경작지, 숲까지 포괄 할 수 있다. '작업시간' 또한 농업 자영업자의 가족 스스로 결정하기 때문에 별로 문제 되지 않는다.

농업 자영업자의 작업장에서 사고란 농장에서의 일과 관련되어 일어나야만 한다. 여기서 농장에서 일어난 일이란 소비하기 위한 생산 과정과 판매를 위한 생산과정 모두를 포함한 개념이다. 지역사회의 공동작업 예를 들어, 수로 공사라든가 마을 가꾸기 등과 관련된 일은 그것이 공간적으로나 구체적으로 자신의 농업·임업과 연관될 때에만 보험으로 보호받는 작업으로 인정된다.

농장의 안팎의 모든 도로 위에서의 일도 보험으로 보호받는 작업으로 인정된다(예: 창고로의 운행). 또한 '경영을 위한 일'도 농업·임업과의 연관이 있는 경우 보호된다(예: 은행업무).

기타 재해들

- 농업·임업과 연계된 가족 활동
- 농장 건물에 대한 조립, 개축 또는 수리와 연계된 활동
- 사업과 연관된 활동을 하러 가는 길에서의 사고

- 추상적인 임차권과 관련된 활동
- 농민의 기술과 공예에 연관된 활동
- 이웃의 지원 속에 이뤄진 활동
- 농업·임업 활동과 연관된 작업
- 영업법의 허가가 필요 없는 농장의 부수입원과 관련된 활동 (농장의 숙박 제공)
- 농업·임업 단체를 위한 활동

농장에서의 재해와 동등하게 인정되는 사고

- 농업·임업 자영자를 지원하는 직업훈련의 참여
- 농업·임업 활동과 연관되는 시험에의 참여 (예:전문인 자격시험)
- 농업·임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공 혹은 민간 단체와 관련된 선거권의 행사

보험 적용

보험 적용은 보험에 의해 보호받는 작업에서 사고가 일어난 시점부터 시작된다.

보험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고

다음의 경우에는 작업장에서의 일과 농업·임업과의 '원인으로서의 연관'이 인정되지 않는다.

- 농업·임업 과 관련되지 않은 일에서의 사고: 여기에는 일상생활, 아주 사적인 필요에 의해 행한 일, 즉 식사, 목욕, 화장실 사용 등이 포함된다.
- 놀이, 스포츠 혹은 여가활동 중의 사고
- 농업·임업의 업무를 마친 이후의 사고 (예: 친인척 방문 중의 사고)
- 음주에 의한 사고
- 신체 내부의 원인에 의한 상해(예: 심장마비)

직업병

직업병은 보험에 의해 보호받는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고 증명될 수 있는 병을 말한다.

일반사회보험법(ASVG)은 어떤 병이 직업병에 속하는지 나열해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위험물질에 의해 유발된 병도 경우에 따라 직업병으로 간주될 수 있다. 농민사회보험(SVB)은 이를 인정하기 위해 보건국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직업병의 세 가지군(群)

기본적으로 직업병은 다음의 세 가지군(君)으로 구분된다.

- 작업장에서의 활동을 통해 발생한 병 : 이것은 비단 농업·임업 작업장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에 해당된다.
- 일정한 의학적 혹은 법률적 조건 하에서만 직업병으로 인정되는 병
- 특정한 기업의 작업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병

질병은 그것이 직업과의 연관성 속에서 발생했을 때만 직업병으로 간주될 수 있다.

농업·임업 분야에서 특히 다음의 직업병이 고려된다.

직업병 군 1

- 피부병
- 소음에 의한 청각장애

직업병 군 2

-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에 의해 발생한 기관지 천식으로 이로 인해 작업에 지장이 있을 경우
- 호흡 혹은 혈액순환의 지장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폐나 기관지의 병
- 작업과 인과관계에 있는 항원으로서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정되며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폐의 기능 저하를 갖는 외원-과민성 폐렴

직업병 군 3

- 동물을 통해 인간에게 감염되는 병
- 특정 곤충에 의해 감염된 병(FSME 혹은 Borreliose)

직업병의 등록

직업병으로의 보험 혜택은 질병이 시작됨과 동시에, 혹은 치료가 필요한 시기 또는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하다면, 작업의 손실이 적어도 20%된 시기부터 적용된다.

신고

사고를 당하거나 직업병이 발생하였을 때 농민사회보험(SVB)은 발생 시기로부터 5일 안에 보험 회사에 알릴 것을 의무시키고 있다. 이 의무조항은 농민사회보험(SVB)이 해당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 필요한 서식과 필요한 서류에 대한 정보는 지방자치단체의 농민사회보험(SVB) 사무소나 혹은 인터넷 www.svb.at/)을 통해 가능하다.

사고의신고

경영자는 보험에 가입한 자가 작업장에서 사망하거나 혹은 3일 이상 혹은 신체 손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모두를 신고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직업병의신고

보험에 가입한 자가 작업장에서 사망하거나 혹은 3일 이상 혹은 신체 손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한 직업병이 발생할 경우, 이 모든 경우는 농민사회보험(SVB)에 보고되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담당의사가 농민사회보험(SVB)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고 시기가 늦어질 경우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2년 내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료의 지불이 신고된 첫 날부터 시작된다.

■ 보험급여

재해예방과 안전상담

대부분의 경우 사고는 미리 예방될 수 있다.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안전상담은 보험지부의 안전상담원에 의해 제공되는 아주 중요한 과업이다. 방송매체, 강연, 안내 팸플릿 등을 통해서 농민의 안전과 재해예방은 항상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농민사회보험(SVB)의 안전상담원은 직접 농업·임업 작업장을 방문해 위험을 인지시키고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상담원들은 또한 농업·임업 전문학교에서 실습세미나를 실시하고 농장에서의 안전한 작업 수행과 삶을 위한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농장에서의 안전상담

안전상담원의 중요한 활동은 농업·임업 보험가입자의 농장에 방문하여 직접 상담을 해주는 것이다. 농업·임업 자영자 및 그의 가족은 이를 통해 작업장에 항상 존재하는 위험 요소들을 인지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을 학습 받을 수 있다. 위험과 위험으로 인한 사고의 가능성을 실제로 체험한 자를 통해 농장의 위험 요소에 대한 예방과 조치의 필요성을 일깨울 수 있다. 위험 요소의 지적만으로는 어떤 재해도 미리 막을 수 없다.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추가적으로 위험의 요소를 정확히 보여주고 농민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려주어야만 할 필요가 있다.

상담을 통한 재해조사

각각의 재해는 재해 원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조사하기 위해 표준화된 질문지로 문서화된다. 기업 상담의 핵심은 건축물, 기계, 전기장치의 안정성 및 작업장 조직과 작업장에서 일하는 자의 안전 의식과 관련된 것들이다. 발견된 문제점들은 문서로 작성되고 일정한 시기 내에 시정되어야만 한다.

농장의 아동보호

여기서 농민은 때때로 육아비용을 상담 받는다. 이 경우 상담은 생활비의 지원뿐만 아니라 농장의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것(논, 밭, 주거지, 놀이터)을 목적으로 한다. 안전상담원은 농민 가족과 함께 작업장인 ‘농장’을 아동과 성인 모두에게 보다 더 안전하게 설계하고자 노력한다.

일일(주간) 보모

‘농장에서의 육아’에서 일일 보모가 아동을 농장의 위험 요소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이 크다. 일일 보모가 농장의 위험 요소를 정확히 인식하도록 돕기 위해, 안전기술을 전수하는 작업장 내 혹은 가정 내 상담이 추가상담으로 제공되고 있다.

안전한 전문근로자와 경영자

농업의 직업훈련에서 안전유지와 건강보호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직업훈련생들의 농장에서 교육에 따른 행동을 수행하는 안전 노하우를 전달하여 좀더 안전한 작업장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농장의 휴가 및 주점

오스트리아 농장 숙박의 주 단위 협회와 농업·임업 경제상공회와 관련해서 숙박을 제공하는 농장에서는 사고의 위험 요소가 검사되고 이것의 시정 방안이 상담을 통해 제공된다. 특히 휴가자들과 함께 있을 때 특히 농장은 긴급한 위험에 적절한 대처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농장 체험학교

‘농장 체험학교’라는 새로운 시도는 학생들에게 농촌에서의 새로운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열어

높고자 한다. 여기에서도 안전에 대한 의식은 중요하다. 학생들이 참여하는 농장에서 안전을 주제로 하는 모임을 열기 위해 안전상담은 '농장 체험학교'의 한 과목으로 채택되어 있다.

안전증서를 통한 정기적인 상담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킨 작업장에는 안전증서가 8년간 수여된다. 이 기간 동안 질 높은 안전기술이 보장되기 위해, 농장은 정기적으로(8년 마다) 안전기술 상담을 받게 된다. 이 증서를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다시 충족시켜야 하고, 지적된 모든 문제점들이 시정되어 있어야만 한다.

추가적인 상담

안전상담에서 지시된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이행되기 위해서는 상담 이후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훈련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협력

농민사회보험(SVB)은 '재해예방'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능한 한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관청, 다양한 서비스기관, 이익집단 그리고 또한 제조회사와 협력한다.

응급처치

모든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완전히 방지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사고 상황'을 미리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 즉, 갑작스런 사고에 대한 응급처치가 필요하다. 법은 사고 장소에서의 '유용한' 응급처치의 보장을 재해보험에 지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일정한 도움자의 지식이 필요하다. 이는 응급처치 과정(예: 오스트리아 적십자에서 제공하는 응급처치 과정)에서 습득될 수 있다. 농민사회보험(SVB)은 가능한 한 많은 응급처치자가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 농민 보험가입

자의 응급처치 과정에의 참가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치료(요양급여)

치료행위와 관련하여 (보험법상) 상해와 질병 자체를 위한 행위일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그 비용을 직접 부담한다. ‘선 급여지급 의무’에 따라 의료보험이 비용을 우선 부담한다. 상해와 질병과 관련된 행위는 수발서비스, 의료행위, 의약품과 치료 보조제를 포괄한다. 사고로 인해 필요해진 의치와 틀니 또한 여기에 포함된다.

치료와 관련된 행위는 법적으로 정의된 바와 같이, 작업장에서의 사고나 직업병을 통해 야기된 상해와 건강장애를 제거하거나 혹은 최소한 개선하는 그리고 그 상해와 건강장애가 더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모든 적절한 수단이라는 목적을 갖는다.

요양급여에서 의료적 급여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다음의 급여가 포함된다.

- 의사의 치료
- 의약품
- 치료적 보조기구
- 병원, 요양원, 기타 기관의 서비스

• 우선 의료보험이 지불한다 : 재해당사자에게는 무엇보다도 빠르고 적절한 치료 행위가 우선이다. 어떤 보험이 비용을 지불하는지는 재해당사자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작업장에서의 사고와 직업병이 발생한 상황에서 의료보험이 ‘선 급여지급 의무’를 갖고 있다. 전업 농업·임업 자영자에게 있어서는 농민-의료보험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입원 치료에서 보험가입자가 자기 부담금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 이미 지불된 비용이 있었다면 차후 환급 받을 수 있다. 병원에서의 응급처치 혹은 주치의의 의료행위 및 이동을 위해

지불된 비용이 이에 해당된다.

재해당사자가 다른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작업장에서의 사고가 자신의 농장에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위의 혜택은 마찬가지로 '선지급' 된다. 복수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다수의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장 먼저 요청을 받아들인 의료보험이 비용을 지불한 의무를 갖는다.

•재해보험은 언제 지불하는가? : 우선, 아주 드문 경우로서 재해당사자가 의료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을 경우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는 재해당사자의 의료보험이 예를 들어 사고로 인해 필요로 하는 의료 보조품이나 재활기관에서의 요양을 포괄하고 있지 않아 그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이다. 이 규정을 통해 보험가입자가 가능한 한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다 (보고의 과정에서 우선 이것이 작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특별 지원

작업장에서의 사고 혹은 직업병을 치료하는 기간 동안 농민사회보험(SVB)은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를 지급하기 위해 상해의 결과로서 발생한 어려움의 정도, 긴 치료기간, 가족구성 비율, 경제적 상황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지원의 가능성은 농민사회보험(SVB) 회장단에 의해 작성된 「특별지원금에 대한 지침서」에 따라 보다 자세하게 규정되게 된다.

필수적 의학 보조기구의 무료 제공

경우에 따라 작업장에서의 사고는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체 장애 혹은 반신마비 등이 올 수 있다. 이럴 경우 보험은 무료로 보철, 인공장구, 휠체어 등의 의학 보조기구를 제공한다.

이에 해당하는 기구는 치료 과정을 보장하거나 상해의 결과를 경감시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 물론 모든 치료기구는 보험가입자 개별적으로 직업의 특성에 맞게 제작되어야만 한다. 또한 이들 기구의 모든 수리비용도 농민사회보험(SVB)이 지불한다.

사회적 경영지원

작업장에서의 사고나 직업병으로 인한 노동력의 상실은 농업·임업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농민사회보험(SVB)은 추가적인 노동자 투입비의 일부를 지불(보조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치료 과정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다. 이 영업 보조금은 작업장에서의 사고나 직업병으로 인한 노동불능의 상황에서도 꼭 이행되어야 하는 영업활동으로 제한된다. 지원의 범위는 기계 및 기업보조조합 간의 계약협정에 따라서 결정된다.

• 언제 경영지원을 요구할 수 있나? : 재해로 인한 다음의 노동력 손실에서 영업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 기업 경영인
- 주업으로 일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 양도자

단, 기업에 다른 적절한 노동력이 존재하지 않고 그 활동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 교체 사유조건

- 2일 이상의 입원
- 15일 이상의 노동불능
- 승인된 치료 과정에의 참여
-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중증환자(장애) 아동과 동반
- 신청 대상자의 사망

>>> 사회적 경영지원의 기간

노동자 교체에 대한 지원은 노동불능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었을 경우에 한해 원칙적으로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사망의 경우에는 2년간의 지원이, 때때로 최대 140일까지 가능하다.

>>> 보조금의 수준

노동자 대체를 위한 보조금은 일일 33유로 (Ust. 포함)이고, 전체 보조금은 승인된 총 비용의 75%를 초과하지 못한다. 농민사회보험(SVB)은 기계를 제공하기 위해 연방 차원의 기계조합과 계약을 체결한다. 이를 통해 투입방식이 계획되고, 농민사회보험(SVB)과 비용이 산정되고 결제가 이루어진다. 투입방식의 조직화를 위해 기계조합은 일정액을 소지할 수 있다.

기계를 제공받기 위한 절차는 이를 제공받기 전에 해당 기계조합의 영업지점에서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기계조합이 계약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보장된다.

재활

작업장에서의 사고 이후 혹은 직업병에 의한 재해당사자는 종종 어떻게 앞으로 일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된다. 어쩌면 집에서 벌써 갑작스런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은 재해당사자에게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과업을 갖는다.

재활의 목적

재활은 “재해자가 직장생활에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상황을 가능한 한 지속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원상 회복이 되도록 신체활동 능력을 다시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치료적 · 직업적 · 사회적 대처가 예상된다.

의료 재활

의료재활은 특히 재활시설에서 행해지는 재해의 치료행위이다. 보험에 의한 치료적 재활수단의 보장에서 일반적으로 재해당사자의 비용 부담은 없다.

직업재활

직업재활을 통해서 재해당사자는 자신의 직업, 혹은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새로운 직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직업재활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된다.

- 재활훈련 7 달째부터 시작되는 직장 재활훈련비 지급
- 직장생활을 지원하는 기계나 도구의 구입을 위한 무이자 대출과 비용 보조금
- 기계나 도구의 보수를 위한 무이자 대출과 비용보조금
- 작업장과 영업건물의 보수나 개조를 위한 무이자 대출과 비용보조금
- 작업전환을 위한 무이자 대출과 비용보조금

이런 대처들을 통해 재해 당사자는 발생한 장애로 인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일을 스스로 수행하고 이를 통해 경제활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만 한다.

농업·임업의 수행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한 다른 직종으로의 재훈련이 고려될 수 있다(예:실명).

>>> 과도기 급여(Uebergangsgeld)의 지원

직업훈련과 재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보험가입자는 재해보험으로부터 과도기 급여를 받는다. 과도기 급여는 기본과세의 40%에 해당한다. 이것은 배우자가 있을 경우 10%, 그 밖의 부양자가 있을 경우 5%씩 증가한다. 과도기 급여의 총액은 기본과세를 못 넘게 되어 있다. 일정한 수입은 물론 과도기 급여에서 고려된다. 그 밖에 재해보험급여, 영업소득, 실업급여,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보조, 장애연금도 고려된다.

사회재활

재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재활' 프로그램 또한 치료적 재활이나 직업재활을 보완하기 위해 보장될 수 있다.

사회재활에는 다음과 같은 지원이 포함된다.

- 건축상의 장애물, 특히 전등의 설치, 출입문의 확대 등을 위한 금전적 지원
- 위생 공간을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적합하도록 보수하는 것
- 손잡이, 문손잡이, 전자스위치 혹은 다른 기술적인 장치의 설치

대중교통의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운전면허증 취득을 위한 재정적 지원
- 장애인 전용 자가용의 구입 또는 보수를 위한 지원

직업재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회재활의 경우에도 대출과 비용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다.

재활상담

농민사회보험(SVB)은 재활상담원을 두고 있다. 재해당사자는 재해 치료 기간 동안이나 혹은 재활프로그램의 기간 동안 이들과 상담할 수 있다. 재해를 통한 장기간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특히 상담원의 역할은 중요하다. 상담에 해당하는 재활프로그램을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상담원은 재해자가 있는 병원에 찾아가거나 직접 집을 방문하여 조언과 지원을 제공한다.

장애자에 대한 현금급여

의료비 지원에 추가하여 재해자의 경제활동능력이 사고나 직업병으로 인해 감소되었을 때 재해보험급여를 지급한다. 이를 통해 재해의 고통이 감소될 수는 없지만, 현금급여는 재해당사자와 그의 가족의 경제적 상황을 도울 수 있다.

경영연금

- 경영연금이 무엇인가? : 연금은 사회보험에서의 현금급여로 종종 사용되지만, 재해보험과 공적연금보험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재해보험에서는 작업장에서의 사고 혹은 직업병 발생 이후 매월 장애연금(Renten)을 지급한다. 노령연금에서 매월 지급하는 급여는 연금(Pension)이다.

농업·임업 분야에서 재해보험이 지급하는 가장 중요한 급여는 경영연금이다. 장애연금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농민과 그의 가족에게 집중적으로 지급된다. 그러나 경영연금은 재해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계속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자를 지원하고 그 영업 수입의 손실분을 보충해 주고자 하는 데 있다.

경영연금은 작업장에서의 사고 혹은 직업병이 1년이 지나고 수입이 최소한 20% 감소했을 때 지급된다. 이의 판정은 농민사회보험(SVB) 의료부의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 적어도 20%의 영업 손실이 있어야 한다. 법률적으로 ‘직업병 리스트’에 해당하지 않는 직업병의 경우, 연금 수급을 위해 적어도 50%의 영업 손실이 필요하다(일반기준).

경영연금 수급은 보험사고 발생 1년 후부터 가능하다. 경영연금을 받기까지의 1년의 기간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소득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장해수당(Versehrtengeld)이 보장된다.

경영연금은 1년에 14번 지급된다. 매월 지급되는 연금 이외에 4월 말과 9월 말 특별수당이 지급 되기 때문이다(중복연금). 연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해 연금액이 연동 인상된다.

- **급여수준** :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수준은 급여지급 기준액과 경제활동 능력의 감소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 급여지급기준액은 무엇인가?

농민재해보험에서 급여지급기준액이란, 매년 연동되는 법률적으로 정해진 일정 단위의 고정 액수이다.

총 연대 급여지급기준액 대부분의 경우에 재해보험에서는 총 연대 급여지급기준액이 사용된다. 이것은 법률적으로 고정된 금액이다. 2009년 기본과세는 17,148.45유로이다. 이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소득의 손실액을 고려한, 즉 부수입까지 고려하여 농민이 평균적으로 획득할 만한 1년 소득액이다.

비교 급여지급기준액 농민이 사고로 인해 손실한 부수입에 있어서 (예를 들어 일반사회보험법(ASVG)에 따른 피고용인), 관련 연관규칙이 적용된다. 여기서 농민사회보험(BSVG)에 따른 총 연대 급여지급기준액은 다른 활동에서의 급여지급기준액과 비교된다. 연금의 계산을 위해서는 두 개의 급여지급기준액 중 더 높은 것이 적용된다.

연금자 및 사냥과 어업 임차인을 위한 급여지급기준액 위의 사람들의 경우, 중증장애자와 유족연금을 위한 급여지급기준액으로서 10,894.26 유로 (2009년 현재)가 적용된다. 중증장애자와 고아연금자의 경우, 5,446.71유로(2009년 현재)가 기본과세이다. 사냥 및 어업 임차인의 경우 이 기본과세는 이를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지 않을 경우에만 사용한다.

>>> 경제활동능력의 감소

작업장에서의 사고 혹은 직업병의 결과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경제활동능력의 감소는 높아진다. 이것은 또한 장애연금의 수준에 영향을 준다. 경제활동능력을 완전히 잃은 자는 ‘완전연금’을 받는다. 이는 연간 기본과세의 3분의 2에 해당하고, 매월 이 금액의 14분의 1을 지급한다.

경제활동능력이 단지 부분적으로 감소되었다면 ‘부분연금’이 지급된다. 연금수준은 경제활동능력의 감소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능력의 감소 정도는 농민사회보험(SVB) 의료부의 의사진단서의 평가내용에 의존하여 판단한다. 능력의 감소율은 추상적으로 일반 노동시장에서 판단된다.

>>> 중증장애자

‘중증장애자’는 적어도 50%의 장애연금을 요청할 수 있다. 혹은 동시에 지급되는 연금지급액 총액으로 50%를 요청할 수 있다. 중증장애자는 장애연금에 추가연금을 받는다. 50%의 경제활동능력의 손실부터 추가연금은 장애연금의 20% 수준이다. 70%의 경제활동능력 손실부터 추가연금은 장애연금의 50% 수준이다.

수발급여 완전연금을 받는 상해자는 - 즉 100% 경제활동능력 손실자 - 재해보험으로부터 수발급여를 받을 수 있다. 수발급여 수급조건은 다른 연금과 마찬가지로이다.

- **임시경영연금 - 정기연금** : 작업장에서의 사고 혹은 직업병이 아직 판정되지 않았을 경우, 우선적으로 ‘임시경영연금’이 지급될 수 있다. 건강상태가 변했을 때, 임시경영연금은 언제나 중지 혹은 인상될 수 있다. 늦어도 2년 이후에는 연금이 ‘정기연금’으로 결정된다. 원칙적으로 이는 1년 단위로 인상·인하 혹은 정지된다. 이의 조건은 재해 상태의 결과에 따라 상당히 변화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적어도 10% 경제활동능력의 감소 수준에서의 변화를 의미한다.

- **중복재해 또는 직업병에 따른 통합 연금** : 다수의 사고와 직업병이 발생했을 때, 늦어도 2년 이후에는 ‘통합연금’이 지급된다. 여기서는 각각의 재해로 인한 경제활동능력의 감소를 더해서 고려하지 않고, 통합된 능력의 감소를 고려한다.
- **경영연금 수준의 재설정** : 경제활동능력이 적어도 10% 변동하였을 때, 농민사회보험(SVB)은 경영연금 액수를 새로 산정한다. 이는 장애자의 신청에 의해 혹은 관청에 의해 가능하다. 연금 수준의 재산정 과정을 통해 10% 미만의 변동이 발생하지만, 이를 통해서 연금 신청권이 발생할 수도 혹은 연금 신청권이 박탈될 수도, 혹은 중증장애의 기준선을 넘을 수도 있다. 기간 연금은 적어도 1년의 기간을 두고 새로 산정될 수 있다. 임시연금은 그에 비해 수시로 변할 수 있다.
- **임의적 연금의 일시금 지급** : 매월 연금 지급에서 농민사회보험(SVB)은 일회성의 급여를 (경영연금의 50% 수준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는 경영연금이 갖는 다음의 두 가지 목적에 의한 것이다: 우선, 재해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인 고통이나 운동능력의 상실 등 ‘개인적으로 원치 않았던 변화’에 대한 보상과, 또한 적어도 노동능력의 상실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부분적인 보상이 그것이다. 경영연금의 두 번째 목표는 기업경영과 직접적으로 결부된다. 즉 경영연금의 절반은 기업경영의 기간을 위해 보상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연금의 보상은 장애당사자의 의지가 필수적이다. 25% 이상의 연금 지급에서는 추가적으로 해당 사회부조 담당청이 참여할 수 있다.

그 밖의 재해보험의 급여로는, 예를 들어 재해 치료행위와 의약품의 제공 등이 존재한다.

장애가 악화되었을 때 → 신고는 필수이다.

작업장에서의 사고 혹은 직업병으로 인한 재해가 상당히 악화되었을 때 현재 지급되고 있는 연금액수를 고려한 연금액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공적연금 수급으로 인한 경영연금의 소멸** :
 - 일반사회보험법(ASVG), 자영자사회보험(GSVG) 혹은 농민사회보험(BSVG)에 의한 노령연금

이나 조기노령연금에 해당되어, 이를 신청하였을 경우 농민재해보험에 의한 경영연금은 철회된다.

- 일반사회보험법(ASVG)에 의한 노동능력의 상실 보험에 의해 폐질 혹은 직업불능연금을 받거나 혹은 자영자사회보험(GSVG)에 의한 경제활동 무능력연금 혹은 사업 무능력으로 인해 연금을 지급받게 될 경우, 농민재해보험에 의한 장애연금은 법정 연금수급연령(여성: 60세/남성: 65세) 이후 첫 번째 달부터 철회된다.
- 농민사회보험(BSVG)에 의한 직업불능연금을 수급할 경우 경영연금은 철회된다. 예외: 직업불능연금을 작업장에서의 사고 혹은 직업병으로 인해 받는 경우, 법정 연금수급연령 이후 첫 번째 달까지 경영연금은 계속 보장된다. 이때, 연금을 받아 발생한 소득은 공정부당금액의 1과 1/2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늦어도 법정 연금수급연령 이후 첫 번째 달 경영연금은 철회된다.
- 경영연금이 철회되는 대신 장애대상자는 경영연금에 해당하는 자본의 가치 절반수준의 수당을 받는다. 이 규칙은 경영연금의 두 가지 목적과 관련된다: 장애의 고통을 위한 개인적인 연금 부분은 수당으로 지급되고, 소득 손실분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연금 부분은 전적으로 기업의 몫이 된다. 노령연금을 받게 될 때부터 - 늦어도 법정 연금수급연령이 60/65세 이상일 경우- 노령연금이 소득보상 역할을 전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휴업수당

경영연금을 받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의 손실액으로 재해 후 1년 동안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노동능력의 상실 정도에 따라 '작은' 혹은 '큰' 휴업수당이 지급된다.

- 작은 휴업수당 : 1년 후 노동능력이 적어도 30%의 노동능력 상실이 지속될 것이라 예상될 때, 작은 휴업수당이 장애당사자에게 지급된다. 농업·임업 경영자는 재해보험급여를 통해 보상될 수 없는 재해로 인한 소득 손실이 발생했을 때 추가적인 조건하에서 작은 휴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업에서 일하는 가족구성원이 재해로 고통 받고 있다면, 그가 노동수입 혹은 질병수당의 신청자격이 없거나 혹은 보험으로 발생한 소득이 없다는 조건이 충족될 경우

작은 휴업수당을 받는다. 작은 휴업수당은 2009년 현재 매일 10.11유로 지급되고, 최대 1년간 즉 장애연금을 받게 되는 기간까지 보장된다. 물론 농업·임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한 다른 가처분소득은 공제된다.

- 큰 휴업수당 : 1년 후에도 노동능력이 적어도 50% 이상 상실이 예견될 때 큰 휴업수당이 지급된다. 큰 휴업수당은 기본과세의 60%에 해당하는 일시급여이다(2008년 연대 기본과세 17,148.45유로에 의해 큰 휴업수당이 10,289.07유로로 책정되었다.).

사망에 의한 유족급여

작업장에서의 사고나 직업병으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 농민사회보험(SVB)은 유족에게 다양한 급여를 제공한다. 모든 유족연금 지급의 경우 보험 가입자가 작업장에서의 사고와 직업병으로 사망하였는지 조사하여야만 한다. 이후 농민재해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한다.

긴급지원

미망인이나 홀아비는 긴급지원으로서 364유로의 일시금을, 아동은 146유로의 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장례비 - 부분보조

장례비용에 대한 보조금으로 총 연대 급여지급기준액의 1/15의 금액이 지급된다. 이 보조금은 장례비용을 지급한 자에게 주어진다. 예외적으로 농민사회보험(SVB)은 또한 장례운송비를 (시신의 다른 지역으로의 운송을 위한)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보조한다. 이의 지급을 위해 가족구성원 비율과 유족의 경제상황 등이 고려된다.

미망인/홀아비 연금

보험 가입자가 농장 재해로 사망시 미망인/홀아비 연금이 지급된다. 이는 기본과세의 20%에

해당한다.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도 보험 가입자가 사망한 때 생활비를 책임지고 있었다면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금 수준은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다.

원칙적으로 미망인(홀아비)연금은 미망인(홀아비)의 사망 시에 지급된다. 예외적으로 미망인(홀아비)이 재혼하였을 경우 유족연금은 철회된다. 철회된 연금 대신 매월 유족연금액의 35배에 해당하는 일시금이(2년 6개월 연금에 해당하는 일시금) 주어진다. 재혼이 다시 무효화되었을 경우 유족연금은 다시 지급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의 유족연금 철회시 일시불로 지급된 액수가 있기 때문에, 연금의 재지급은 빨라야 2년 6개월 지나서야 개시된다.

고아연금

입양된 자녀나 의붓자녀는 고아연금을 받는다. 원칙적으로 이는 만 18세까지 지급된다: 자녀가 학업 중인 경우 혹은 경제활동능력이 없을 경우 이는 최대 만 27세까지 지급 가능하다. 아이가 한 쪽 부모를 잃은 경우는 기본과세의 20%를, 양쪽 부모를 잃은 경우는 기본과세의 30%가 고아연금으로 지급된다.

유족연금의 총 액수

유족연금의 총 액수, 즉 미망인(홀아비)연금과 고아연금의 총 액수는 기본과세의 80%를 넘지 못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유족연금은 삭감된다. 여기서 이혼한 배우자의 미망인(홀아비)연금은 고려되지 않는다.

유족연금 지급 시기

유족연금은 사망 일부부터 지급되기 시작한다. 사망자가 이미 연금 수급자라면 유족연금은 장해당 사자가 사망한 날 이후부터 지급된다. **☞☞☞**